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1. . . (제 회)	

책임운영기관의 설치·운영에
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전해철 (행정안전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1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책임운영기관의 설치·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가. 보건복지부 수시직제개정 검토결과에 따른 총정원 한도 변경

- 장애인건강검진센터를 운영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재활원 총정원 한도를 12명 증원

나. 행정협업과제 수행을 위한(협업정원 검토결과)에 따른 1개 기관 총정원 한도 변경

- 식품영양성분정보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해양수산부 소속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총정원한도를 1명 증원하되, 증원되는 정원은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하며, 2022년 4월 30일까지 존속

3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

책임운영기관의 설치·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책임운영기관의 설치·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의2 국립재활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 “345명”을 “357명”으로 하고, 같은 표 국립수산과학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 “621명”을 “622명”으로 하며, 같은 표에 비고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※ 비고

1. 국립수산과학원 총정원의 한도 중 1명은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하며, 해당 정원은 2022년 4월 30일까지 존속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행정안전부 조직진단과	
연 락 처	(044) 205 - 2335